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2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송석준·김선교·이종배

김성원 • 주진우 • 유상범

조배숙 · 김예지 · 윤상현

박준태 · 강대식 · 나경원

곽규택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,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었음.

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'가상자산 사업자'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 고,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).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"를 "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"로 한다.

제2장제4절에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6(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) ① 공사는 채무액이 2억원 이 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경우 그 인 적사항·채무액 등(이하 "인적사항등"이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 말하며, 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단공개심의위원회(이하 "명단공개심의위원회"

라 한다)를 둔다.

- 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대상 부실관련자(이하 "공개대상자"라한다) 선정, 소명내용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관련자 (이하 "공개대상자"라 한다)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,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- 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.
- 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, 공개대상선정절차, 공개 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의 요구. 손해배상청구권 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 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 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사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 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 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 및 금융회사-----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 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 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 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 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 를 적용하다. 제21조의6(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<신 설> 공개) ① 공사는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

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 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 련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·채무액 등(이하 "인적사항등"이라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 말하며, 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 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 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 단공개심의위원회(이하 "명단공 개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
- 대상 부실관련자(이하 "공개대 상자"라 한다) 선정, 소명내용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 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

관련자(이하 "공개대상자"라 한다)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,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- 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.
- ①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 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에 재산을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, 공개대상선정 절차, 공개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